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목일(4월 5일) 공휴일 지정 등〉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88호)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이인선의원안】			1
【장경태의원안】			2
II . 검토의견			3
1. 식목일(4월5일) 공휴일 지정			3
2. 대통령 보궐선거일 및 재선거일 공휴일 지정			6

【이인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31.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장경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8.

다. 회부연월일 : 2025. 4.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식목일(4월 5일) 공휴일 지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이인선의원안·장경태의원안 제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4.</u> ~ <u>9.</u> (생략) <u>10.</u>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3. (현행과 같음) <u>4. 식목일(4월 5일)</u> <u>5.</u> ~ <u>10.</u> (생략) <u>11.</u> (생략)

나. 검토의견

식목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¹⁾에 따른 기념일로서 정부 주관으로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종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음.

개정안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근래 들어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하여 경북 북부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산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조성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실된 산림 자원의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이 확대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²⁾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목일(4월 5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해당일의 의미를 국민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공휴일 수(15일)와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온 상황('21년 4일, '23년 2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점,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대통령 보궐선거일 및 재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 보궐선거일 및 재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장경태의원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8. (생략)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u>선거일</u>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10. ----- ----- <u>선거일</u>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u>재선거의 선거일</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외에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이하 같음)의 선거일³⁾도 법률 규정으로 직접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경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정해지는 경우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행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상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 등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요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임.

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중요 선거로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해당 선거일은 원칙적으로 현행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사유가 확정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체없이 지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적 실익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규정하면 별도의 국무회의 절차가 생략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점, 그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오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